「KB 나라사랑우대통장」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KB 나라사랑우대통장(이하 '이 통장'이라 함)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①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인 군인(장교, 부사관, 군 의무복무병(대체복무자 포함), 나라사랑카드 발급대상자 및 소지자, 육·해·공군사관생도, 간호사관생도 등 각급 사관생도, ROTC(학군사관후보생), 학사 장교후보생, 여군사관후보생, 준사관·부사관 후보생 등 각급 장교후보생 및 사관 후보생 포함)으로 합니다. ② 이 통장은 1인 1계좌에 한합니다.

제 3 조 예금과목

이 통장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 4 조 기본이율

이 통장의 이율은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게시한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 5 조 우대이율

- ① 적용대상 : 이 통장 가입자가 결산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2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연 1.9%p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.
 - 1. 이 통장으로 KB 국민은행과 급여이체 계약에 의한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
 - 2. 이 통장으로 육군「통합자금관리시스템」에 의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
 - 3. 군인공제회에서 KB국민은행으로 제공하는 급여자료 중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※ 각호 이외의 급여이체는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② 적용방법: 이 통장 가입자가 제 1 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통장의 결산기 평균잔액 중 1 백만원이하의 금액까지는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며, 1 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 6 조 전환계좌의 이율적용 기준

- ① 이 통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이 속한 결산기에 대해서는 기존 예금의 이율을 적용하고, 그 다음 결산기부터 제 4 조 및 제 5 조에서 정한 이율(이하 "이 통장의 이율"이라 합니다)을 적용합니다.
- ② 이 통장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이 속한 결산기에 대해서는 이 통장의 이율을 적용하고, 그 다음 결산기부터 전환된 예금의 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 7 조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

- ① 이 통장에서 전월(1일 ~ 말일) 거래실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금융(인터넷뱅킹, 폰뱅킹, 모바일뱅킹) 타행이체 수수료와 KB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 - 1. 이 통장에서 각종 공과금(아파트관리비, 지로, VAN, CMS) 등의 자동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계좌간 자동이체 실적(KB Wise 플랜 적립이체 포함)이 있는 경우
 - 2. 이 통장에서 KB 국민카드(KB 국민체크카드, KB 국민비씨카드 포함) 결제 실적(현금서비스 포함)이 있는 경우
- ② 통장의 신규 또는 전환일로부터 익익월 10일까지는 은행거래실적에 관계 없이 전자금융(인터넷뱅킹, 폰뱅킹, 모바일뱅킹) 타행이체수수료(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제외)와 KB국민은행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
제 8 조 군인우대서비스

이 통장 가입자가 「e-파워자유적금」을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 현재 영업점에 게시한 우대이율로 해당 예·적금의 이율을 우대합니다.

다만, 타 상품에 의해 우대이율을 이미 적용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부 칙 이 약관은 2010.11.01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최
이 약관은 2012.02.22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최
이 약관은 2012.07.12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5.12.01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8.12.27 부터 시행합니다.

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